

해외지부규정

제정 2005. 5. 3.

개정 2020. 9.24.

제1장 총 칙

제1조(근거 및 목적) 이 규정은 당 협회 정관 제5조제6항에 의거 지부로서 설치된 해외 지부(이하 “지부“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0. 9.24.>

제2조(명칭 및 주소) ① 명칭은 “재○○대한골프협회“라 하고, 영문으로는 “Korea Golf Association in ○○“라 한다.

② 주소는 교민이 많이 거주하고, 현지 공관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3조(설치목적) 각 국가별 재외동포 및 교민이 골프스포츠를 통하여 체력향상과 건전하고 명랑한 기풍을 진작시킴과 아울러, 지역별 골프회(이하 “지회”라 한다)를 통할지도하고,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한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사업) 각 지부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관장한다.

1. 체력증진과 친목도모를 위한 각종 골프대회의 주최, 주관 및 승인
2. 대한체육회 승인에 의한 전국체육대회 참가선수단 파견
3. 지회의 육성 지도·감독
4. 우수경기인 육성 및 지원
5. 전반적인 골프활동에 관한 각종 자문 및 건의
6.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및 기타 필요한 사업

제2장 조 직

제5조(조직) 지부는 대한체육회가 승인한 대한체육회 해외지부에 가맹된 골프협회와 산하 지회로 조직한다.

제6조(해외지부가맹) ① 대한체육회가 승인한 대한체육회 해외지부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대한체육회 해외지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지부로 승인 될 수 있다.

제7조(지회 설치) ① 지부는 산하에 지회를 동포나 교민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.

② 지회는 지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설치한다.

제8조(권리) 각 지부는 당 협회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
① 당 협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.

② 당 협회가 주최·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.

③ 당 협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·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.

제9조(의무) 각 지부는 당 협회에 대하여 다음이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.

1. 당 협회의 정관, 제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2. 사업계획서, 예산서 및 사업보고서, 정산서를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.

3. 당 협회 정관 및 동 규정에 준하여 규약 또는 정관을 제정하여 당 협회에 보고하고, 이의 개·수정이 있을 때마다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4. 임원의 선임 및 개선이 있을 때마다 이를 당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3장 임 원

제10조(임원의 종류 및 정수) ① 지부의 임원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1. 선임임원 : 회장, 부회장, 이사, 감사

2. 대 의 원 : 지회장(지회 설립 시에 한함)

3. 위촉임원 : 명예회장, 고문, 참여, 위원

② 집행부의 선임 임원 수는 각 지부의 실정에 맞추어 운용할 수 있다.

제11조(선임임원) ① 임원의 선임, 보선은 당 협회 정관 및 가맹경기단체 규정을 준용하여 선임한다.

② 임원의 임기는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촉 임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③ 회장, 부회장, 전무이사는 집행부의 당연직 이사이다.

제4장 총회 및 이사회

제12조(회장선출방법) ① 회장은 대의원 총회(이하 “총회“라 한다.) 에서 선출하여야 한다.

② 회장 입후보자는 한국인으로 덕망이 있고 골프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이어야 한다.

제13조(총회) ①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지회 회장이 당연직 대의원으로 총회에 참석해야 한다.

② 당연직 대의원이 부득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써 부회장 1명을 지명하여 대리 참석케 할 수 있다.

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, 매 총회 7일전 지부의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이전에 개최하며, 총회 결과는 매번 당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4조(이사회) ①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로 구성되며, 지부의 최고집행기관이다.

②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.

③ 이사회는 지부의 정관이나 규약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장 회계 및 사무국

제15조(회계) ① 지부의 사업목적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기부금, 찬조금, 사업 수익금, 이자수입 등으로 충당한다.

②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③ 예산서 및 결산서는 매년 정기총회 개최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④ 감사는 필요한 경우 회계절차 및 집행에 대해 감사할 수 있으며, 이는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시정토록 요청할 수 있다.

제16조(사무국) ① 지부는 지부 소재지에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,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
②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 <2005. 5. 3.>

제17조(효력)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부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

영하되, 당 협회 정관이나 규정 그리고 지시사항을 위배하여서는 안 된다.

제18조(제한사항) 지부가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임원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국위와 본회의 명예를 실추하였을 경우에는 지부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9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당 협회에 승인된 지부는 동 규정에 관계 없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.

제20조(지부설립승인) ① 당 협회 지부를 설립코자 하는 국가나 지역은 대한체육회 지부가입승인서, 발기인총회 회의록, 임원 명단 및 조직현황, 정관이나 규약, 사업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, 결산서 및 예산서를 첨부하여 지부 설립승인을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지부승인은 당 협회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21조(보칙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. (2005. 5. 3)

부 칙 <2020. 9.24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